

의안번호	2219151
의 퇴 인	박대출 의원
회 답 일	2026.6.17.
추 계 번호	26E279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
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8년 0.24억원 등 2028~2030년까지 3년간 총 0.72억원(연평균 0.2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제85조의7)	-0.24	-0.24	-0.24	-0.72	-0.2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85조의7(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)	○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○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5조의7(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시행일 및 연장된 적용기한, 법인세 신고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8~2031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
 - 법인세 신고시점 등을 고려하여 공장 이전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일 다음 해에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2025년 감면실적이 향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추계
 - 조세지출 실적이 최근 감소하였으나,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 과세특례의 감면액이 향후 어떻게 변동할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최근 실적이 유지된다고 전제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(또는 익금)에 대한 과세특

레임

- 대상: 공익사업 시행지역 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의 대지·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
 - 특례내용
 - 거주자(개인):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, 5년 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
 - 내국법인: 양도차익을 이전한 공장에서 조업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5년 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에 산입
 - 현행 적용기한: 2026년 12월 31일
- 「조세지출예산서」에 따른 동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은 2022년 0.4억원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24~2025년 0.2억원 수준을 유지

[표 2]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 과세특례 감면실적: 2019~2025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(전망)
계	0.08	0.1	0.1	0.4	0.3	0.2	0.2
- 소득세	0.05	0.1	0.1	0.2	0.06	0.04	0.04
- 법인세	0.03	0.1	0.1	0.2	0.2	0.2	0.2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나. 추계 방법 및 결과

- 2025년 감면실적 잠정치(0.24억원)가 향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세수효과를 추정
-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과 관련된 대지·건물의 양도에 대해 예측할 근거 자료가 없으며, 공익사업 시행 등에 따라 감면실적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실적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
- 개정안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8년 0.24억원 등

2028~2030년까지 3년간 총 0.72억원(연평균 0.2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·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 과세특례 3년 연장(안 제85조의7)	-0.24	-0.24	-0.24	-0.72	-0.24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